

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7 일	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	(전화번호:)			
주택 관리사보	합격증번호	제 호(발급 시 · 도 :)			
	취 득 일	년 월 일			
실무 경력	① 관리사무소장 근무 경력	년 개월			
	② 주택관리업무 종사 경력	년 개월			
	③ 주택 관련 업무 종사 경력	년 개월			
	④ 합산 경력	년 개월			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7조제2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 가. 재직·경력증명서 1부 나. 근로소득증명원 1부 2. 사진 1매 3.5cm×4.5cm(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)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.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([]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, []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및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- 2.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.
- 3. 신청인 제출서류인 재직·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람은 「형법」 제23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며,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수, 주소, 승강기 설치여부, 난방 방식을 적어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- 1. ①은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- 2. ②는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- 3. ③은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- 4. ④는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
처리절차

